폭행·상해·재물손괴·공연음란·업무방해·특수재물손괴

[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. 12. 13. 2018고단2091, 2287(병합), 2596(병합)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

【검 사】김준호, 조지은(기소), 홍해숙(공판)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이경수(국선)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벌금 1,000만 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